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지원신청서 작성 안내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 지원신청서 제출 시, 작성 안내(1~2페이지) 및 참고 1-3(8~11페이지)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양식

구분	내용	비고
파일형식	한글(HWP) 파일	길 위의 인문학 (일반과정) · 파일명 : 2025년 길위의인문학_지원신청서_시설명
		지혜학교 (심화과정) · 파일명 : 2025년 지혜학교_지원신청서_시설명
작성분량	최대 A4 6매 이내	· 작성항목 간 기재 내용 반복 최소화 · 사업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도록 작성
본문서식	글씨체 : 맑은고딕 11포인트, 줄간격 : 160%	· 해당 범위 내에서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
기타사항	· 이미지 첨부 시, 용량을 줄여 첨부(저용량의 파일로 변환하여 삽입) · 기존 양식을 준수하되, 작성 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표 행 추가/삭제 등)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의 2025년 지원신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시, 행정심의에서 결격 처리되오니 반드시 첨부 확인 후 제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길위의인문학 (일반과정) 지원신청서	필수	· 지원신청서 서식파일(한글(hwp))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지원신청서 PDF파일로 변환 금지 · 파일명 : 2025년 길위의인문학 지원신청서_신청시설명

■ 행정심의 결격 사유 : ①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분류 잘못 선택), ② 지원신청서 미제출, ③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2025년도 이전 지원신청서 양식사용) ④ NCAS 열람 및 다운로드 시 오류(파일 깨짐 등)

■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결과발표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예산편성

■ 예산계획 작성 시,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신청 개요의 예산과 지원신청서의 예산을 동일하게 10,000,000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지원금 총액 10,000,000원 이하 지원신청액 작성 불가 (예시, 8,000,000원 등)

* 하단 이미지 참조

총소요액 10,000,000원

신청액 10,000,000원

총 소요액

지원신청금액

신청액

지원신청금액

* 총 소요액	0 원
[총 소요액:	0,000,000원]

* 신청액	0 원
[신청액:	0,000,000원]

■ 예산편성 가능 항목

항	목	세	내역
인건비 (110)	기타인건비 (05)	사례비	강사 -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 ※ 신청시설의 대표자가 강사로 참여할 수는 있으나 대표자 본인에게 강사 사례비 지급 불가
			상근인력 - 신청시설의 상근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 불가
			보조인력 - 프로그램 강의 보조, 출석 체크, 사진 촬영 등 강의 준비지원 - 탐방 진행 시 보조 등(보조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기재할 것)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다과비 -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다과구입비 - 1회 1인 기준 최대 5,000원	
		주제도서구입비 - 사업 주제 도서로 큐레이션 및 담당자 참고용 (동일 도서 구입 불가, 상한액 30만원)	
		인쇄비 - 프로그램 수업 교재 및 사례집 등 인쇄비 - 참가자 모집 등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인쇄비 - 프로그램 홍보용 기념품 제작 불가 ※ 사업수행을 위해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 및 제작물에는 문체부 및 예술위 로고(CI) 표기	
		입장료(체험료) - 체험, 탐방 프로그램 입장료 ※ 자체시설의 입장료 지급 불가, 1회 1인 2만원 이하	
		기타 운영비 - 인문 프로그램 관련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 가능 ※ 단,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비는 총지원금의 10% 이상 집행 불가 - 체험, 탐방 시 발생하는 소액의 의약품 등 구매비	
	공공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 우편비, 택배비 등 ※ 퀵비 불가/ 자체시설의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공금 지출 불가	
		여행자보험료 - 체험, 탐방 시 관광버스 임차가 있을 경우 보험가입 필수	
	임차료 (07)	공간 대관료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교육 장소에 한해 임차 ※ 자체시설의 임차료 지급 불가	
		차량 임차료 -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이동 차량 운용	
	재료비 (11)	체험재료비 - 프로그램 운영 필요시 ※ 1인 1회 15,000원 이하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교통비 - 본 사업 관련 필수 워크숍 참석 시 담당자 본인 한해 집행 가능	

□ 기타 안내

-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를 확인(체크)후 지원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정신확산팀 (E-mail) inmun2@arko.or.kr (Tel) 02-739-3945

※ 문의 가능 시간 : 월요일~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지원신청서

■ 신청개요

☞ 모든 기재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입력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시설 개요	시 설 명		사업자 등록 번호	업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			종목	
	주 소				
	홈페이지	https://			
	대표전화		대표메일		
	시설유형 (☑ : 해당란 체크)	<input type="checkbox"/> 공연시설 <input type="checkbox"/> 전시시설 <input type="checkbox"/> 도서시설 <input type="checkbox"/> 문학관 <input type="checkbox"/> 지역문화활동시설 <input type="checkbox"/> 문화 보급 전수 시설 <input type="checkbox"/> 종합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			
	사업수행 이력 (☑ : 해당란 체크)	<input type="checkbox"/> 신규 참여 <input type="checkbox"/> 기존 참여 (<input type="checkbox"/> 2024 <input type="checkbox"/> 2023 <input type="checkbox"/> 2022 <input type="checkbox"/> 2021 <input type="checkbox"/> 2020 <input type="checkbox"/> 2019 <input type="checkbox"/> 2018 <input type="checkbox"/> 2017 <input type="checkbox"/> 2016 <input type="checkbox"/> 2015 <input type="checkbox"/> 2014 <input type="checkbox"/> 2013)			
확인 사항	사업추진 협조 확인			동의	미동의
				☑ 해당란 체크	
	① 본 시설은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관련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등 주관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본 시설은 「2025년 길 위의 인문학」의 효과성 측정(사전/사후), 만족도 조사 추진 등 필수 이행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참여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 본 시설은 「2025년 길 위의 인문학」의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시 적극적으로 협조.참여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 본 시설은 프로그램 강사의 이력.경력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참여 강사가 프로그램 일정 및 준수사항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안내하는 서류 제출 등의 기한을 준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1.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준수 할 것을 약속합니다.</p> <p>2. 제출된 지원신청서는 사업평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p> <p>3. 지원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기타 부담은 신청한 문화시설에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평가항목 :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및 우수성 (50%)

- 프로그램 대상, 목표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가?
- 프로그램 일정 및 홍보, 참여자 모집 등 실행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 작성 요령 : 아래 형식에 맞게 내용 기재, 단 추가 서술 내용이 있을 경우 항목 추가 및 변경 가능

프로그램 기획 의도(유사 주제의 프로그램과 차별화 방안 포함)

- ◆
- ◆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수강생 혹은 참여자) 및 선정 이유

* 신청시설 혹은 강사진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이해도, 프로그램 구성 배경 등에 대한 설명 포함

- ◆
- ◆

프로그램 세부 내용

회차	프로그램 주제	교육내용	일시	장소	강사명	진행방식
예시	자연에서 찾는 인문학	우리 지역의 공원에서 찾는 인문학	00.00 00시~00시	00문학관	홍길동	강연
1						
2						
3						
4						
5						
6						
7						
8						

회차	프로그램 주제	교육내용	일시	장소	강사명	진행방식
9						
10						

참여 강사 현황 및 이력사항

연번	강사명	소속 및 직책	전공	강의 경력 (최근 경력 위주로 기재)
예시	홍길동	00대학교 강사	00000	1. 2024년 길위의인문학 000프로그램 강의
1				
2				

※ 강사 2인 이상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강사는 인문네트워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인문활동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또는 **시설에서 자유롭게 섭외**할 수 있음. 단, 반드시 참여가 확정된 강사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
→ **인문활동가 정보 (바로가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계획 및 홍보방안

◆ 참여자 모집 계획

-
-

◆ 홍보방안

-
-

기대효과 (프로그램 수강 이후 시설 혹은 강사진과의 후속 연계 활동 지원 방안 등)

- ◆
- ◆

3. 예산집행 계획

◎ 평가항목 : 예산계획의 적절성 (30%)

- 예산집행 계획은 프로그램 구성에 맞게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예산 항목은 프로그램 규모에 맞게 편성되었고,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예산편성 시, 전체 신청금액(1천만원) 중 사례비 50% 이상, 운영비 50% 미만으로 편성할 것
- 프로그램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산출근거 기재(세부내역 산출근거 작성 필수)
- 해당 사항이 없는 세목은 삭제 가능
- 지원금 교부신청 시, 일부 예산집행 항목 등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참고)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1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함

□ 수입

구분	금액(원)	비율(%)
지원신청액(국고보조금)	10,000,000	100.0%

□ 지출

항	목	세	산출근거	집행액(원)
인건비 (110)	기타인건비 (05)	강사사례비	· 강사(단가)x(시간)x(회차)=0,000,000	0,000,000
		보조인력 사례비	· 보조인력(단가)x(시간)x(회차)=0,000,000	0,000,00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다과비	· 참여자 다관구입비 (단가)x(인원수)x(회차)=000,000	000,000
		주제도서비	· 프로그램 연계 도서비 (단가)x(권수)=00,000	00,000
		인쇄비	· 프로그램 교재 인쇄비 (단가)x(제작부수)=000,000 ·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등 인쇄비 (단가)x(제작부스)=000,000	0,000,000
		입장료 (체험료)	· 탐방 장소 입장료 (단가)x(인원수)x(진행횟수)=000,000	000,000
		기타운영비	· 프로그램 진행 시 필요 구급 의약품 구매 (단가)x(구매개수)=00,000	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 우편 및 택배 발송 (단가)x(횟수)=00,000	00,000
		여행자 보험료	· 여행자 보험료 (단가)x(인원수)x(진행횟수)=000,000	00,000
	임차료 (07)	장소대관료	· 장소 대관료 (단가)x(횟수)=00,000	000,000
		차량임차료	· 차량 임차료 (단가)x(차량수)=000,000	000,000
	재료비 (11)	체험재료비	· 체험비 (단가)x(인원수)x(진행횟수)=000,000	000,000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교통비	· 워크숍 출장 여비 (철도 또는 버스 금액)x(횟수)=000,000	000,000
총계 (사례비 0,000,000원(00%), 운영비 0,000,000원(00%))				10,000,000

참고1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모집 분야

분야	세부 분류 및 정의	
문학	문학일반, 동양·서양문학, 문예이론, 문학이해, 인문학적 글쓰기 등	
역사	역사일반,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민속, 미술사, 문화사, 전통문화, 지역사, 예술사 등	
철학 (종교)	철학일반, 동·서양철학, 미학/예술학, 종교일반, 한국·동양·서양종교, 윤리, 신화 등	
문화·예술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콘텐츠, 문화재, 문화이해교육 등	
사회과학 계열	인문학과 연계하여 시민의 의식수준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 전반(시민정치·경영·경제·외교·법 등)을 다루는 영역	예) 문화외교, 시민인문학, 정치인문학, 법의 인문정신, 역사경영, 인문경영, 정치학과 경제학의 만남, 문화심리학, 세계시민 의식 함양, 다문화 이해 등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인문학과 연계하여 현대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자 생활과학, 자연과학, 천문·지리·생명과학·공학 분야를 다루는 영역	예)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심리과학, 뇌 과학, 인간과 생태환경, 인문예술미디어, 디지털인문학, 미디어리터러시 등
융복합	특정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간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가치 및 인문자원을 다루는 영역	예) 인문학과 삶 등 일반 인문교양, 도시인문학, 생활인문학, 생태·환경관련, 힐링캠프, 행복프레임, 전인교육, 인성교육, 창의력교육 등
제외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자격증, 어학 등의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주제 및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어학 습득교육(외국어회화, 토익강의 등), 직업교육(요리교실, 캘리그라피, 쉼트 등), 직무습득(세법, 컴퓨터 관련 등), 학력보완과정(문해교육 등), 자격관련습득(바리스타, 사회복지사, 각종 강사반 등) • 개인 취미 및 문화센터 등의 예술 주제 학습, 강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음악교실(합창, 노래교실, 악기류: 기타·우쿨렐레·하모니카·바이올린·피아노 등), 실기교육(꽃꽂이, 캐리커처그리기, 공예, 무용, 바둑교실, 서양화, 서예, 주산·암산 등), 사주·관상, 영화감상, 비학술적 체험교육(행사에서 진행되는 단순 체험 등)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구분	주요 내용
1. 공연시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도서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4. 문학관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	
가.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나.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다.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구분	주요 내용
5.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다.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6. 문화 보급 전수 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을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7. 종합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구분	주요내용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가. 평생학습관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나. 평생학습센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생활문화센터)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나. 지역서점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 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자체별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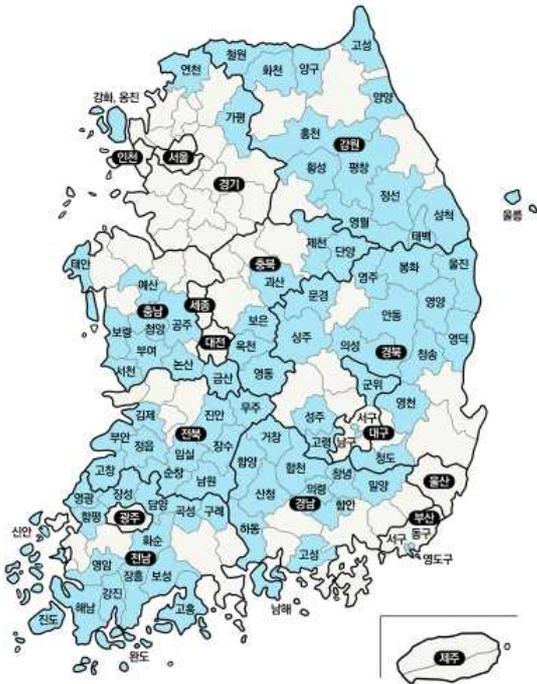
참고3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지역 18개)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